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236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 2. 5.
4. 회부일자 : 2020. 2. 9.

II . 제안이유

1.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선출기한 및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기 명시되어 있는 것을 충복 규정한 반면 '유치원규정'에 대한 심의 근거는 미비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4.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이 이동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전자투표를”을“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에 의한 투표 등을”로 수정(안 제4조제1항)
2.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위원 선출이 가능하며, 기한내에 선출이 어려운 경우는 선출기한 조정 가능 조항 신설(안 제4조제6항)
3. 재난 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 공백이 없도록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임기 연장 가능 조항 신설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4.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유치원규칙”을 “유치원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치원규칙 외의 유치원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및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이동 반영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소집할 여유가 없을때에는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1조제2항)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조례안 [별첨 7]

가.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위원회 선출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시정명령)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3. 협의 :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민주시민생활과 협의 완료

4. 기타

가. 신·구조문 대비표 : 조례안 [별첨 1]

나. 입법예고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조례안 [별첨 3]), 재입법예고 생략 공문 (조례안[별첨 3-1])

※ 기 입법예고(2020.7.16. ~ 8.4.)이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집행(조문이동)에 해당되어 재입법예고 생략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조례안 [별첨 4])

라.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조례안 [별첨 5])

마.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 결과통보서(조례안[별첨 6])

6) 관계법규: 조례안 [별첨 7]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236호로 발의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교직원 전체회의, 학부모 전체회의 등을 개최할 수 없을 때의 위원의 선출방식 및 선출기한 조정, 임기개시일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1)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①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⑦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²⁾에 따른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교직원 전체회의 등을 통하여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해당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등 학부모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개정 취지 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안 제4조제1항 및 제6항

- 안 제4조제1항은 현행 ‘전자투표’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에 의한 투표’로 구체화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코로나19와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의 학부모 전체(대표)회의, 교직원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서신, 우편, 전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투표 등 비대면 방식으로 위원을 선출하거나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한편 향후 다양한 감염병에 의한 재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유치원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2)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위원의 임기)

- 안 제6조제4항은 안 제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출기한이 조정된 경우 차후 선출된 위원의 임기개시일 역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 제4조제6항과 연동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선출 기한의 조정으로 기존 위원의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은 선출기한의 조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